

제 11 과

당사자를 위한 평생계획



제 11 과

[당사자를 위한 평생계획]

I.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의 개념과 필요성

질문 1. 다음 질문을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1) 예전에 당사자의 평생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 당사자에게 평생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약간 필요없다. ④ 전혀 필요없다.
- 3) 평생계획에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약간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 4) 평생계획이 당사자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약간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물론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책임은 부모님의 몫인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시설의 가족교육에 나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부모님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애가 남다르고 모든 면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족은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가족중심보다는 개인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부모님 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척, 동네사람들이 도와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의지하고 소속할 수 있는 집단이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수도 적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당사자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재활이 그만큼 불리하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남게 되는 당사자들을 누가 돌보아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사자의 평생계획이다.

평생계획은 일차적 보호제공자(대부분 부모님)가 사망,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당사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계획(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재정적 계획(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활할 것인지), 법적인 계획(생활하면서 해야되는 의사결정과 법적인 보호 대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혼, 성(性), 출산, 양육, 취업 등에 대한 계획도 당사자의 평생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아마도 많은 가족들이 걱정만 할 뿐, 실질적인 평생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포함한 인생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당사자와 가족들도 평생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건강시설과 정신건강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것이다.

당사자의 평생계획에 대한 관심은 외국에서 매우 높는데 미국정신보건가족협회(NAMI)에서는 PLAN(Planned Lifetime Assistance Networ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신장애인의 향후 보호 계획에 있어서 가족들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사자를 누가 돌볼 것인지 결정하고, 재정적인 문제(생활비 마련, 수입, 복지혜택 등), 주거 문제 등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자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평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192명의 부모대상 조사 연구(서미경, 2000)에서는 평생계획에 대해 의논할 대상은 주로 배우자와 비장애 자녀라고 응답하였고, 부모가 늙었다는 인식이 적을수록, 비장애 자녀의 도움이 많을수록 평생계획이 더 잘 되어 있었다. 농어촌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홍순애, 2008)에서는 평생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72.8%나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방법을 몰라서(68.1%), 생각하기 싫어서(28.7%)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교육에서 실시한 평생계획 실태조사(이종국, 2011) 결과 참석자중 평생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은 20%에 불과했지만, 평생계획이 필요하다(90%), 평생계획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85%) 등 평생계획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계획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평생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평생계획의 주요 내용

A 주거계획 :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주거(집)는 평생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입원이나 입소되어 있는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적으로 살아가기 곤란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당사자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과 함께 주거
- 독립 주거(자가, 임대, 하숙, 자취, 고시원 등)
- 친지(친척, 친구)집에서 주거
- 지역사회 공동 주거(공장 기숙사 등)
- 지역사회시설 주거(정신재활시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등)
- 보호시설 주거(요양원, 양로원 등)
- 종교시설 주거(기도원, 절 등)
- 의료기관 입원

현재 여러분의 가족인 당사자의 주거 형태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야기 해보자.

질문 2. 만일 당사자의 1차적 보호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가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로 더 이상 당사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사자의 주거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0로 표시해 주세요.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당사자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당사자의 형제와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척들과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병원에서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신재활시설(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거제공시설 등)에서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평생 돌봐줄 종교시설(기도원, 절 등)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평생 돌봐줄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 사후 당사자는 형제자매/친인척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의 당사자 주거지원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95개 시설에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2016년 12월 현재, 표 1.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거제공시설(116개), 공동생활가정(40개), 종합시설(19개), 입소생활시설(20개, 서울 단기보호시설 4개 포함) 순이다.

주거시설의 개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이용하기 힘든 곳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형태의 중간거주(하프웨이 하우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표 1.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현황 (2017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번호	지역	시설현황							
		계	공동 생활가정	입소 생활시설	종합시설	주간 재활시설	주거 제공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1	서울	109	4	4 (서울은 단기 보호시설)	1	37	53	3	7
2	경기	43	20	20	1	9	10		2
3	인천	8				3	5		
4	강원	3		1		1	1		
5	대전	28	8	2	2	5	11		
6	충남	23	2	4		1	16		
7	충북	11		2	1	3	5		
8	대구	16	1		1	9	4	1	
9	경북	12	2	3	1	3	3		
10	부산	12			2	6	2		2
11	경남	4		1	1	2			
12	울산	2				2			
13	광주	7				6	1		
14	전남	4		1	1		2		
15	전북	14	3		8	2	1		
16	제주	3				2	1		
17	세종	2		1			1		
	계	301	40	20	19	91	116	4	11
	비율 (%)	100	13.29	6.65	6.31	30.23	38.54	1.33	3.65

이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복지 유형을 알아두면 필요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공급 : 다가구매입, 장애인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주택개조 : 집수리사업, 사랑의 집 고치기, 장애인주택개조

대인지원 : 주택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임대료보조



B 재정 계획 : "무슨 돈으로 살아 갈 것인가?"

질문 3. 만일 당사자의 1차적 보호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로 더 이상 당사자를 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사자의 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해주세요.

1) 재정 계획을 누구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사자 본인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나 이웃
⑤ 정신보건전문가 ⑥ 은행 또는 보험회사 ⑦ 후견인 ⑧ 기타()

2) 노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상속 시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간의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신장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② 정신장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③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
④ 비 장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주거계획에 이어 반드시 수립해야할 계획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 계획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개인적 차원

만약 당사자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당사자 혼자 힘으로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을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의 도덕심을 믿고 장애인의 재산을 맡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돈을 맡은 사람이 당사자의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맡은 사람이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맡은 사람이 사업실패나 재산 탕진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당사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염려된다면 제삼자 생계 급여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자인 부모가 제삼자인 수탁자에게 재산관리를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업 활동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가 사회복귀와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2) 국가적, 제도적 차원

-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등이 있다.
- 고용정책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이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가 경제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적 차원의 주요 급여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등이 있으나 제한적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은 정부가 보장해 주고,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신장애인이 사회인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과 기준

국제 기준	국내법과 기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국제장애인권리협약 5) 장애인권리선언 6)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으로 향상을 위한 원칙(M원칙)	1) 헌법 2) 정신건강복지법 3) 장애인차별 금지법 4) 인신보호법 5)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는 법적인 문제 중에서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대해 계획하는 것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특히 일차보호의무자 부재 시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와 재정적인 문제 못지않게 당사자를 입원시키고 퇴원시킬 수 있는 보호자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016년 5월 29일 전면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당사자의 입퇴원 결정과 부양에 있어서 보호의무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보호의무자)

1)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① 후견인(민법 제5장 제1절, 928, 929조, 2011년 3월 7일 신설)

- 미성년후견인(친권자가 없을 때 법원이 지정, 1명)
- 성년후견인(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지정, 여러 명 가능)

② 부양의무자(민법 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1)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영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특별히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명시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앞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생교육 지원)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성년후견제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성년후견제도가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민법 조항 : 민법 제3조~제17조, 제929조~제959조의20)

★ 성년후견제도란?

-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청구방법

▶ 관할법원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비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 37조의2).

★ 재판진행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http://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D 성(性)과 결혼

1. 기본 원칙

당사자의 성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당사자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따라서 성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 2) 인간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성생활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문제들과 책임도 있는 것이다.
- 3) 당사자도 성욕과 가정을 갖고 싶은 욕구를 똑같이 느낀다. 다만 정신장애라는 특성에 따라 일부 다른 면이 있을 뿐이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대우가 문제일 뿐이다.
- 4) 성생활과 결혼은 삶의 질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당사자의 재활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 5) 당사자의 성과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2. 성과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성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병증상과 약물복용에 따르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즉, 대인관계 회피, 위축, 성적 기능 저하, 무월경, 발기부전, 사정지연 등.
- 2) 당사자와 가족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다.(수치심, 성적 기능 저하, 스트레스 대처 능력 저하, 좌절감 등)
- 3) 이성을 만나고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고,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
- 4) 성과 결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 올바른 이성교제, 성적 욕구의 해소, 성병 예방, 피임법 등
- 5)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
 -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
 -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 성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것이 낫다.
 - 결혼은 하더라도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 양육할 수 없다.

3.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 및 조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지면 좋다.

- 1) 연애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좋아해야 한다.
- 2)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안정되어야 한다,
- 3) 각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능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 5) 본인 자신의 충분한 수입이나 주위의 경제적 도움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확보된다.
- 6) 부부가 사는 곳에 가까운 지지체계가 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치료진 등. 이에 따라 정서적 안정, 결혼 생활 기술에 도움을 주고 계속 살피볼 수 있어야 한다.
- 7) 치료진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시 응급,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
- 8) 준비된 결혼이어야 한다.
 - 성생활, 결혼의 의미, 남편 및 아내의 역할과 책임,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준비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9) 결혼한 후에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부부간의 대화, 재활치료 참여, 부부교육 및 모임 등

4.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

다음의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 1) 조절되지 않은 심한 증상(특히 행동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난폭, 충동적 행동 등)
- 2) 치료 불순응(약을 잘 안 먹거나 치료진에 대한 심한 불신)
- 3) 자기관리능력 부족(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
- 4) 지지체계 취약(부모, 친척, 친구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5)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급한 결정

5. 가족들의 역할

당사자의 원만한 성과 결혼을 위해서는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 1) 가족들부터 성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 2)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감 고취, 정서적지지, 정보 제공, 성교육 등
- 3) 든든한 지지체계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정서적, 경제적 지원.
- 4) 치료의 동반자가 되어 증상관리, 약물관리, 위기관리, 당사자와 치료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 5) 결혼생활의 모델을 보여준다.
- 6)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와준다.
- 7)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한다.
 - 정신보건시설과 가족협회의 교육, 홍보, 계몽 활동에 참여
 - 성교육 프로그램,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촉구

6. 흔한 질문

질문 4. 당사자끼리 결혼해도 되나요?

답 :

질문 5. 결혼하면 병이 호전되나요?

답 :

III. 평생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당사자의 평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 1) 가족들은 평생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 평생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 현황 파악, 분석, 목표 설정
 - 관련 자료 수집
- 3)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도와줄 대상자를 선정한다.
 - 당사자(대상자), 가족, 정신건강전문가, 법률가, 후견인 등
- 4) 가족,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 5) 소비자 욕구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평생계획 모델을 개발한다.

질문 6. 당신은 위와 같은 평생계획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번호	평생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이 세워져 있다	계획이 없다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계획 (대책)
1	주거 계획	①	②	③	
2	재정적 계획	①	②	③	
3	법적 보호 계획	①	②	③	
4	결혼 계획	①	②	③	
5	법적인 보호자(가족)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확보	①	②	③	

부록 <당사자의 평생계획에 대한 가족의 인식 조사>

패밀리 링크 교육에 참여하신 가족 여러분들께 이번 교육과정 중에 소개할 평생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 보신 후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 당사자의 평생계획이란?

일차적 보호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가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더 이상 당사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전문가가 그들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주거, 재정, 법적인 보호, 결혼, 보호자 문제 등)를 계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 만일 당사자의 1차적 보호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가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로 더 이상 당사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사자의 주거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O로 표시해 주세요.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당사자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당사자의 형제와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척들과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병원에서 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단가정(그룹홈)이나 대리가정(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처럼 같이 살아주는)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평생 돌봐줄 종교시설(기도원, 절 등)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평생 돌봐줄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 사후 당사자는 형제자매/친인척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나. 만일 당사자의 1차적 보호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이유로 더 이상 당사자를 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사자의 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해주세요.

1. 재정 계획을 누구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사자 본인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나 이웃
⑤ 정신건강전문가 ⑥ 은행 또는 보험회사 ⑦ 후견인 ⑧기타()

2. 노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상속 시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간의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신장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② 정신장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③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
④ 비 장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다. 당신은 위와 같은 평생계획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번호	평생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이 세워져 있다	계획이 없다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계획 (대책)
1	주거 계획	①	②	③	
2	재정적 계획	①	②	③	
3	법적 보호 계획	①	②	③	
4	결혼 계획	①	②	③	
5	보호자 역할 유지 (일차 보호자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확보)	①	②	③	

〈참고 자료〉

- 서미경(2000) : 성인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43pp. 106-130. 한국사회복지학회
- 서미경(2006) :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 : 뉴질랜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33-56. 한국사회복지학회
- 서미경(2007) : 정신장애와 가족. 집문당
- 이종국(2011) : 화성시정신보건센터 가족교육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 실태 조사(강의자료)
- 홍순애(2008) : 농어촌 정신적 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 충남 태안군 거주 정신적 장애인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 PLAN(Planned Lifetime Assistance Network) :
<http://www.nationalplanalliance.org/>
- 성년후견제도 소개 자료 :
http://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 정신건강복지법 소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